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870

제출일자 : 2026. 8. 21.
제 출 자 : 달성군수

1. 제안이유

화원유원지 관련 미운행 시설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

2. 주요내용

화원유원지 관광객 이용시설 내용 삭제
(안 제2조제1호 및 제3호, 안 제2조의2제2항, 제8조제2항, 안 별표 1)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지방자치법」 제153조, 제156조(※ 붙임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기타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
(2) 입법예고(2026. 5. 28. ~ . 6. 17.) 결과 : 의견 없음

(3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(5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(7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.

1. “관광객 이용시설”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이란 비슬산 관광객 이용시설을 말한다.

제2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.

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.

별표 1 중 제2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“관광객 이용시설”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이란 비슬산 관광객 이용시설 및 화원유원지 관광객 이용시설을 말한다. 2. (생 략) 3. “화원유원지 관광객 이용시설”이란 화원유원지의 일정 노선·구간을 반복적으로 다니는 친환경 전기차를 말한다. 4. ~ 5. (생 략)	제2조(정의) ---------- ----------. 1. “관광객 이용시설”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이란 비슬산 관광객 이용시설을 말한다. 2. (현행과 같음) <삭 제>
제2조의2(위치) ① (생 략) ② 화원유원지 관광객 이용시설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사문진로 1길 40-12에 둔다.	4. ~ 5. (현행과 같음) 제2조의2(위치) ① (현행과 같음) <삭 제>
제8조(운행 노선·구간) ① (생 략) ② 화원유원지 관광객 이용시설의 운행노선은 화원유원지 주차장(이하 본항에서 “주차장”이라 한다)으로부터 약초원, 동물원을 지나 전망	제8조(운행 노선·구간) ① (현행과 같음) <삭 제>

대까지를 상행노선으로 하고, 전망대로부터 편백나무숲, 수변을 지나 주차장까지를 하행노선으로 하되, 그 운행구간은 군수가 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.

[별표1]

이용료

1. 비슬산 관광객 이용시설

(단위 : 원)

구 분		요 금
편도	소인	3,000
	대인	5,000
· 부가세 10% 포함		

2. 화원유원지 관광객 이용시설

(단위 : 원)

구 분		요 금
편도	소인	3,000
	대인	5,000
· 부가세 10% 포함		

[별표1]

이용료

1. 비슬산 관광객 이용시설

(단위 : 원)

구 분		요 금
편도	소인	3,000
	대인	5,000
· 부가세 10% 포함		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153조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56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 ·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